

의안번호	제144호
의결 연월일	2019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발의자	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9년 2월 26일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
----------	-----

발의연월일: 2019년 2월 26일

발 의 자: 김영주, 이숙애, 서동학,
박성원, 이의영, 임기중
황규철의원

1. 제안이유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실시한 2018년 청소년도박 문제 실태 조사 결과 충북의 경우,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10.7%가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분류되었음. 이는 2015년 대비 증가율(4.6%) 전국 최고 수준으로 그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온라인 불법 도박 등 각종 도박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도박 예방과 대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나.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위원회 설치(안 제5조)
- 라. 학생 도박 실태조사(안 제6조)

- 마. 도박 예방교육의 실시(안 제7조)
- 바. 도박 중독 학생 등에 대한 지원(안 제8조)
- 사.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안 제9조)
- 아. 예산지원(안 제10조)
- 자.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9-7호
2019. 1. 29. ~ 2019. 2. 18.(특이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온라인 도박 등 도박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대처 해 나갈 수 있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위해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학생 및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피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
4. 학생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생 도박 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예방교육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학생 도박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도박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박 예방교육은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도박 중독 학생 등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도박 중독 등 도박 위기학생의 치유와 완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및 치료 등 적절한 지

원이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 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과 근절에 관한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도박 예방 및 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도박 예방·근절문화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상담·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3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63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2. 5. 23., 2017. 12. 19.>

1.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계획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행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조정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3.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
 5.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과 치유 등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하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사행산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불법사행산업을 근절하는 데 필요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를 위한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12. 5. 23.>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온라인 불법 도박 등 각종 도박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도박 예방과 대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제5조 학생도박 예방교육 위원회 설치에 따른 참석 수당 등 제반비용

3. 관련조문

- 제5조 학생도박 예방교육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은 교육청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비용 산출을 미반영함
- 안 제5조 학생도박 예방교육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위원회는 최대인원 10명을 전제 외부위원으로 구성함을 전제로 함
 - 회의 개최는 연간 2회 개최함을 전제로 참석수당은 「충청북도교육청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회의시간은 2시간 초과하는 것으로 적용함.
- 안 제6조 「학생 도박 실태조사 등」은 권고적 조항이어서 비용 산출을 미반영함
- 안 제7조 「도박 예방교육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 필요 시 예방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권고적 조항에 해당함.

나. 추계 결과:

연간 소요비용 추계		연도별 소요비용 추계(단위: 천원)					
산출기초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1. 위원회 운영	13,500	1,500	3,000	3,000	3,000	3,000	13,500
가. 참석수당 150,000원×10명×2회=3,000,000	13,500	1,500	3,000	3,000	3,000	3,000	13,500

○ 산출근거

- 위원회 운영(연) : 150천원(참석수당) × 10명 × 2회 = 3백만원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참석기본수당: 100천원, 2시간 초과수당: 50천원)
 - 지급대상 : 외부위원 10명
 - 횟수 : 2회(2019년 1회)
 - ※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추계함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교육국 체육보건안전과장 안희철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1,500	3,000	3,000	3,000	3,000	13,500	
보통교부금	1,500	3,000	3,000	3,000	3,000	13,500	
세 출	1,500	3,000	3,000	3,000	3,000	13,500	
참석수당	1,500	3,000	3,000	3,000	3,000	13,500	
재원 조달	1,500	3,000	3,000	3,000	3,000	13,500	
의존 재원	소 계	1,500	3,000	3,000	3,000	3,000	13,500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1,500	3,000	3,000	3,000	3,000	13,50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